##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87

발의연월일: 2025. 2. 28.

발 의 자:이수진・남인순・김문수

송옥주·김준혁·정준호

추미애 • 유호중 • 박홍배

위성곤 • 전종덕 • 서미화

전진숙 · 김현정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, 재 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 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(이하 "심리지원")하 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주를 '구조, 복구,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'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 현장에서 다양한 수습,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, 조사 및 자원봉사를 명시하여,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심리적 안정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##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"치료"를 "치료, 수습, 조사, 자원봉사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2(국가트라우마센터의	제15조의2(국가트라우마센터의
설치・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	설치·운영) ①
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	
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(이하	
이 조에서 "심리지원"이라 한	
다)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	
센터를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	2
조, 복구, <u>치료</u> 등 현장대응업	<u>치료, 수습, 조사, 자</u>
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	원봉사
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